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##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

전문공보담당자 검사 고승우  
전화 054-730-4331/팩스 054-730-4338

## 보 도 자 료

2024. 3. 21.(목)

### 제 목

## 실종선고 사망간주된 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기간 내 교도소 관할 법원에 실종선고 취소 청구 및 인용

▣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(지청장 윤국권)은 2008년 가출하여 16년간 전국 각지를 떠돌며 살아 온 실종선고 사망간주 피고인이 지난 **3. 4. 단순 생계형 절도 사건으로 구속 송치된 사안에서, 3. 11.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검사가 직접 실종선고 취소심판을 청구**하였고, 구속기간 내인 **3. 13. 인용결정**을 받음

- ▲ 실종선고란 실종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의 심판에 의해 실종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, 실종선고된 자가 살아있는 것이 확인될 경우 법원의 실종선고 취소심판이 있어야 실종선고에 따른 사망간주 효과가 사라짐
- ▲ 민법은 실종선고 취소 청구권자로 검사, 본인, 이해관계인을 규정하고 있어, 검사가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권리를 회복하고 본인 및 이해관계인들의 공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

▣ 본건은 노숙생활을 하며 생계형 범죄로 구속된 실종선고 사망간주 피고인에 대하여 **송치 즉시 실종선고 취소 희망의사를 확인하여 실종선고 취소 요건 및 절차, 관할법원에 대한 법리검토** 등을 거쳐 **검사가 제한된 구속기간 내 신속히 실종선고 취소 인용결정**을 받아 실종선고를 받은 자의 권익을 보호한 사안임

▣ 앞으로도,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공익적 비송사안에 적극·신속 대응하는 등 사건관계인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임

## I

###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#### ① 피고인

- A (남, 54세, 前 전기기술자)

※ A는 '08. 가족과 함께 살다가 가출하였고 이후 생사가 불명해지자 '17. A의 가족이 실종선고를 청구하여, '18. 8. A에 대한 실종선고가 있었음

#### ② 공소사실 요지

- '24. 2. 20.경 경북 영덕군 병곡면 도로에 주차된 차량 안에 있던 담배 5갑을 꺼내어 가지고 감 [절도]
- '24. 2. 28.경 경북 영덕군 소재 휴게소 건물의 뒤편 창문을 열고 들어가 냉장고 안에 있던 식료품을 꺼내어 감 [야간주거침입절도]

## II

### 수사 및 실종선고 취소 경과

- '24. 3. 4. 영덕경찰서, 구속송치  
※ A는 강릉에서 출발하여 해안선을 따라 약 1주일간 도보로 이동하여 '24. 2.중순경 영덕군에 도착하였고, '24. 2. 28.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긴급체포됨
- '24. 3. 5. 영덕지청, 서울가정법원에 실종선고 심판서 발급 의뢰
- '24. 3. 7. A 면담 및 조사  
※ A로부터 '실종선고를 취소받고 사회복귀를 하고 싶다'는 진술 확인
- '24. 3. 8. A에 대한 실종선고 심판서 확보, A 가족 전화면담  
※ A의 가족들 역시 실종선고 취소를 원하는 사실 확인
- '24. 3. 11. 영덕지청, 실종선고 취소 청구
- '24. 3. 13. 포항지원, 실종선고 취소 인용결정
- '24. 3. 21. 영덕지청, 구속기소

- 본건은 일정한 거처가 없이 실종선고 사망간주된 구속 피고인에 대하여, 송치 즉시 실종선고 취소 요건 및 절차 확인, 관할법원 법리검토, 필요한 제반 서류 확보 등을 통해 구속 송치일로부터 일주일만에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하여 구속기소 전 실종선고 취소 인용결정을 받아 실종선고자의 권익 보호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한 사안임

- ▲ 가사소송법은 실종선고 취소를 대상자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서 관할하도록 규정함
- ▲ 본건 피고인은 오랜기간 전국을 돌아다녀 생활근거지가 없고 실종선고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말소되었으나, 민법상 거소지를 주소지로 대체하는 규정 및 피고인이 포항교도소 미결수용 중이고 형 선고시까지 미결수용될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근거로 위 교도소를 주소지로 해석하여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취소 심판 청구함
  - ※ 영덕지청은, 관할구역 내 교도소가 없어 구속 피의자들을 최근거리 교도소인 포항 교도소에서 수용 중임

- 인용심판 확정시 영덕군청 등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여 말소된 주민등록을 회복하고 주민등록증 교부할 예정임
- 앞으로도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공익적 비송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사건관계인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임 